

「국제교육원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6. 1.) → 2021. 6. 28. 개정 판 (시행 2021. 6. 28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09/compare?from=992&to=124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19:3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구) 본원에 국제교류센터, 국제학생지원센터, 한국어교육센터,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,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를 둔다. 각 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0-06-08>	제5조(기구) 본원에 국제교류센터, 국제학생지원센터,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. 각 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0-06-08>
제9조(운영위원회)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, 부원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재무실장,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-06-08>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,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. 3.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. 4.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. 5.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9조(운영위원회)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, 부원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재무처장,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-06-08>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,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. 3.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. 4.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. 5.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국제교육원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한국어교육센터,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,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"를 "한국어교육센터"로 한다.

제9조 중 "재무실장"을 "재무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